

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제74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「군포시시설  
관리공단 정관」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

2016년 8월 30일

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 11 호

##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

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(사업)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도시공원의 관리·운영사업

부 칙

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영기획실
입 안 자	직 위	경영기획실장
	성 명	김 하 선
	담당 성명 (전화번호)	박 양 수 (390-7617)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  행	개   정   안	비고
<p>제31조(사업) (생 략)</p> <p>1 ~ 12호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13. (생 략)</p>	<p>제31조(사업) (현행과 같음)</p> <p>1 ~ 12호(현행과 같음)</p> <p><b><u>13. 도시공원의 관리·운영사업</u></b></p> <p>14. (현행 제13호와 같음)</p>	